

# 군산대학교교수커리어지원센터규정

제정 2004. 2. 26. 규정 제798호

**제1조 (목적)** 군산대학교 교수의 교수·연구·학생지도·사회봉사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산대학교 교수Career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조 (사업내용)**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전임교원 또는 강의조교를 위한 교수학습지도법의 강의·워크숍
2. 정보화 기자재 사용, S/W 제작기법 강의·워크숍·자문
3. 교수·강의기법 클리닉
4. 교수·학습지도 전문자료 제공
5. 교수·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·지원, 연구포럼(Forum)비 지원

**제3조 (센터소장)** ① 본 센터에 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 소장은 교무처장의 제청

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본 센터의 업무와 행정실장 이하 소속직원을 장리한다.

③ 소장에게는 월정액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.

**제4조 (분임운영위원회)** ① 본 센터의 분야별 서비스의 의견수렴·심화·확충·조정을 위하여 학문분야별 분임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학문분야는 6개 단과대학별 1개 분야씩 6개 분야로 한다.

③ 각 학문분야별로 분임운영위원회를 두며, 각 분임운영위원회는 각 해당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

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각 분임운영위원회별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며, 동 위원 및 분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 (의사)** ① 본 센터 각 분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동 위원회별 제적위원수 과반수 출석에 출

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.

② 소장은 본 센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전 분임운영위원이 참석한 위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동 위원총회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분임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.

**제6조 (조직)** ① 본 센터 하부조직으로 교수법개발부, 교육매체지원부, 평가지원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제1항의 각부에는 부장을 두며, 소장은 분임운영위원 중에서 각 부장을 임명한다.

**제7조 (평가)** ① 본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총장은 설문조사·모니터링 방법 등을 이용하여 본 센터의 연도별 업적 및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만족도 및 업적평가는 수, 우, 미, 양, 가로 구분하며, 평가점수가 미 이하인 경우, 총장은 소장

및 분임운영위원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

**제8조 (시행세칙)** 본 규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의 표준적 운영을 위하여 본 센터는 센터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 ( 제정 2004. 2. 26. 규정 제798호 )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조직운영 경과조치)**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 예산확충 및 센터의 업무가 심화·다양화

될 때까지 분임운영위원회 및 행정실에서 통합 운영한다.